

교육정책포럼

통권
361

교육정책네트워크

19 July 2023

www.eduforum.re.kr



교육시론

- 학교폭력은 교육적 해결이 가능한가?

현안문제진단

- 학교폭력 처리의 딜레마
- 교육공동체의 치유와 성장을 위한 학교폭력 처리방안
- 2023년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통해 살펴보는 학교폭력예방방법의 쟁점

외국교육동향

- 미국의 학교폭력에 대한 법제와 정책



교육통계

- 학교폭력실태조사에 나타난 학교폭력 변화 양상



교육정책네트워크

교육정책포럼

통권
361

Contents



04. 교육시론

학교폭력은 교육적 해결이 가능한가?
한유경 | 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장

발행처 한국교육개발원
27873 충북 진천군 덕산읍 교학로 7
발행인 류방란
편집위원장 황준성
편집위원 이상철, 김효정, 정경애(KEDI),
심대현(교육부), 이윤진(서울교육청),
이재열(KRIVET), 정성수(대구교대), 손형태(적상중)
편집실 이상철, 정은하
편집실전화 043 530 9581
등록번호 진천 라00003
ISSN 1739-4325
발행일 2023년 7월 19일 제 361호/월간
홈페이지 <http://www.eduforum.re.kr>
<https://edpolicy.kedi.re.kr>
디자인 및 인쇄 리드릭·전화 02 2269 1919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
2023 비매품

본지의 내용은 한국교육개발원의
공식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12. 현안문제진단

학교폭력 처리의 딜레마

김승호 | 서원고등학교 교사

교육공동체의 치유와 성장을 위한
학교폭력 처리방안

김지혜 |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장학사

2023년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통해
살펴보는 학교폭력예방법의 쟁점

전수민 | 법무법인헌재 변호사

30. 외국교육동향

미국의 학교폭력에 대한 법제와 정책

백경희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7. 교육통계

학교폭력실태조사에 나타난 학교폭력 변화 양상

김나영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조사지표연구실 연구위원

FOCUS

학교폭력은 교육적 해결이 가능한가?

한유경 |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장

학교폭력은 피해자들에게 평생가는 사라지지 않는 후유증

올해 초 잔혹한 학교폭력이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드라마가 인기를 끄는 한편, 많은 유명인의 학교폭력 과거가 폭로되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쉬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아이들끼리의 철없던 실수나 장난이 아닌 피해자들에게 평생 사라지지 않는 후유증을 남깁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된다고 하더라도 학교폭력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들은 이미 잊어버렸는지 모르는 그 고통 속에서 피해자들은 상처가 아물지 않은 채 살아야 한다는 것에 국민 여론도 학교폭력 가해자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가해학생 분리 2차 피해 방지 내실화 및 권리 보장

지난 4월 12일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주된 내용으로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조치 기록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고 졸업 이후 최대 4년 동안 보존하게 됩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사항은 대학교 입학 정시전형에 반영되며,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기록 삭제 심의시 피해학생 동의 및 가해학생 반성정도, 불복 진행 상황을 고려하도록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피해학생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가해학생이 피해학생과 신고자와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가중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학생에게 가해학생 분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가해학생의 불복 진행 과정에서 피해학생 지원을 강화하고 단위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강화하려는 조치들이 발표되었습니다. 요약하면, 이번 대책은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가해학생 분리 및 2차 피해 방지 내실화, 피해학생의 권리 보장, 그리고 가해학생 교육·선도 조치 강화를 큰 축으로 합니다.

정부는 2012년 학교폭력 근절대책이 수립된 이후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등 수위가 약한 학교폭력 사안에도 엄정 대응하는 무관용 원칙을 정립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기록 보존 기간을 줄이는 등 피해학생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불복 소송 증가로 이에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법률서비스 시장이 확대되고 가해학생 측에 유리한 불복 진행에 대한 우려도 있었습니다. 이에 2023년 4월 학교폭력 종합 근절대책을 통하여 일방적이고 지속적인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재정립하고 학교폭력 피해학생 중심의 보호조치를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교육적 활동 권한 강화를 통한 단위학교 학교폭력 대응력의 제고

그런데 이번에 함께 제시된 학교의 교육적 활동 권한 강화를 통한 단위학교 학교폭력 대응력 제고 및 인성교육 강화라는 추진 방향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폭력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 부과 못지않게 단위학교에서 학교장과 교사의 역할 역시 중요합니다. 이번 조치에서는 단위학교의 기능을 다각적으로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첫째, 사안 발생 초기에 대한 학교장의 권한을 강화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학교장 즉시 분리 기간을 최대 3일에서 7일로 두 배 이상 연장하였고, 사안 발생 즉시 학교장 긴급조치로 2호(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조치를 의무화하였으며, 학교장 긴급조치에 7호(학급교체)를 추가하고 6호(출석정지) 기간을 '심의 결정 시'까지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020년 단위학교 전담기구의 학교폭력 심의 기능이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이관되면서 단위학교의 교육적 기능 및 역할이 축소되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대책에서 학교장의 기능을 다양하게 확대한 것은 교육지원청의 심의 전에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이 다소 제한적이었던 상황을 개선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단위학교의 화해, 조정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2020년 단위학교의 학교폭력 심의 기능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이관되면서 학교의 화해, 조정 기능도 함께 이관되었습니다. 이번 대책에서는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는 경미한 사안임에도 피해학생이 심의를 요청한 사안은 학교 전담기구에서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학교장 자체해결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현장 지원을 위해 교육청에 상담·복지 전문가, 화해·분쟁 조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피해 회복·관계개선 지원단 구성 및 운영을 강화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화해, 조정의 필요조건은 가해학생의 진정한 반성과 피해학생의 화해 의사입니다. 피해학생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해학생의 사과와 화해, 조정을 추진하는 것은 또 다른 2차 가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별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학교폭력 행위 등의 특성을 총체적으로 고려한 교사의 전문적인 판단 및 대응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학생 인권은 지속해서 강화됐지만, 교권은 약화되고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이 보장되지 못해 교사가 학교폭력 업무를 기피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대책에서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에서 교사의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가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하였고, 수석교사 선발 시 학교폭력 대응 및 생활지도 전문성도 고려하도록



하고,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종결한 사안에 대하여 가해학생에게 별도의 선도·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필수화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 및 역량 강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외국에서는 정부 혹은 전문가단체에서 구체적인 생활지도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교사가 교육과정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혹은 위험징후를 보이는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와 더불어 평상시 학급 및 수업 운영 과정에서의 생활지도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와 지원 및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과 교육적인 조치의 강화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지원 그리고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과 교육적인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합니다. 피해학생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 없이 가해학생이 단순히 학교폭력 범상의 조치만 받고 정상적으로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것은 피해학생에게 또 다른 2차 피해 고통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해학생을 위해서도 적절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행동이나 인지, 태도의 교정을 위한 교육적 조치가 함께 필요합니다. 가해학생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피해학생이 원한다면 진심으로 사과를 전하고 조정하고 화해할 수 있도록 교육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다른 학생들과의 갈등을 배움과 성장의 기회로 만드는 것이 교육적 해결

학교폭력에 있어 교육적 해결, 그리고 회복적 정의란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해 단순히 응보적 차원에서 선도조치를 부과하기보다는 반성과 성찰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상처와 아픔을 회복시켜 주기 위한 화해 노력을 요구함과 더불어 피해자 스스로가 이를 받아들이고 용서함으로써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국민이 희망하는 가해학생 교육·선도조치의 강화만으로는 피해자의 완전한 정신적·신체적 피해와 회복을 담보하기는 어렵습니다. 가해학생이 자신의 과거 행동을 반성하고 잘못된 생각과 태도, 행동을 교정하여 이 사회에 이바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살피고 교육하는 것이 진정한 교육적 해결일 것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 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교육뿐만 아니라 관련 학생 간의 분쟁 조정도 주요 입법 목적 중 하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학생 간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학교 안에서 교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들에게 올바른 가르침을 주자는 의도입니다. 학교에서의 이러한 교육적 경험은 학생들이 이후의 삶에서 서로 다른 타인들과 갈등을 해결하고 존중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돕는 귀중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갈등을 배움과 성장의 기회로 만드는 것이 바로 교육적 해결입니다.



한유경 교수는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교육정책연구실장 등을 거쳐 현재는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장, 대학원장, 교육대학원장으로 일하고 있으며 학교폭력대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SUBJECT_01

학교폭력 처리의 딜레마

김승호 | 서원고등학교 교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다. 해당 법 제2조(정의)를 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중략)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이다. 이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가해자가 학생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오직 학생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만이 중요하다. 물론 이 취지는 학생이 학교 밖에서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은 또래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할 때, 학교에 신고하면 교사가 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와 함께 가해자를 발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는 것으로 짐작된다. 학교 밖의 일이라고 교사가 나 몰라라 해서 안 된다는 뜻이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정의하다 보니 극단적인 경우도 가능하다. ‘방학 중 학생이 PC방에서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여 지구 반대편의 어른과 게임을 하다가 어른이 학생에게 채팅으로 욕을 한 경우’도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그래서 학교폭력 사안이 너무 방대하다는 지적이 있다. 사안을 처리하는 입장에서도 난처하다. 이 모든 것들을 다 학교폭력예방법과 매뉴얼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 생긴다. 법과 매뉴얼은 현실을 모두 포함할 수 없으나, 자율성은 축소되고 관련자들은 법에 대한 유권해석에만 매달리게 되었다. 이른바 법화(法化)된 학교다¹⁾.

1) 김용(2017). 법화사회의 진전과 학교 생활세계의 변용. *교육행정학연구*, 35(1), 87-112.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강화, 그 끝은 어디에?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할 때 피해자 학부모들은 대개 완전 분리를 요청한다. 학교폭력은 평생 트라우마이니 이들을 분리하여 회복을 돕자는 취지는 이해한다. 그런데 학교폭력 처분에서 학생 간 완전 분리는 전학이나 퇴학밖에 없다. 완전 분리를 요청하던 학부모들은 낮은 수위의 징계가 나올 경우 재심으로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강한 처분이 나온다고 해서 학교폭력 피해자들의 트라우마가 해결된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학교폭력 처리 결과와 관련된 논란은 주로 가해자 처분에만 관심이 높다. 최근 논란이 된 고위 공직자 후보 자녀 사건도 아주 높은 수위의 징계인 강제전학을 받아 전학을 가게 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이 논란을 잠재우지는 못 했다. 정부는 여론을 반영하듯 가해학생에 대한 엄정대응을 강화하였다.



피해자들과 사회에서는 가급적 강한 처벌을 원하지만, 강한 폭력에 대한 처벌 기관은 사법기관이지 학교가 아니다. 이번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학교폭력’에 대한 최고 처벌조차도 대중들이 공감할 만한 충분한 처벌이 되지 못한다. 반대로 피해학생은 이후에도 트라우마를 겪으며 졸업 이듬해까지도 대학을 못 갔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다. 가해학생 처분이 피해학생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관심 가져야 할 것은 피해학생 보호와 회복인데, 이러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예컨대, 교육현장에 배치된 상담교사의 비율은 2022년 기준 초등학교 26.1%, 중고등학교 51.4%에 불과하다²⁾.

한편, 큰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만들어진 법과 정책에, 작은 사건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된다. 예컨대 똑같은 사회봉사 처분이라도 선도위원회의 처분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내려진 처분 중 어느 것에 불복이 더 많을까? 단연 후자다. 이것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기 때문이다. 학교폭력의 스펙트럼은 매우 넓다. 법과 매뉴얼은 모든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성이나 학교폭력의 수준 등과 상관없이 일원화시키고 있으니 여러 부작용이 나타난다. 그 혼란의 피해는 누가 보는 것일까?

이슈가 되고 개정이 될수록 더욱 꼬이는 현장들

학교폭력예방법이 2008년 처음 제정된 이후 벌써 18개의 부칙이 달렸다. 10여 회가 넘게 개정이 일어났다는 뜻이다. 이러한 변화는 대부분 특정 사건을 계기로 일어난다. 예컨대 처음에는 모든 학교폭력에 대해 동일하게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하다가, 이후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제외하는 방향으로 지침이 변화하였다. 이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사소한 것도 용납하지 않겠다던 엄벌주의에서 기조를 완화한 것이다. 그런데 최근 학교폭력 논란이 커지면서 정부는 다시 엄벌주의 기조로 돌아섰다. 모든 대입전형에 학폭 기록을 반영하고, 기존 기록 보존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였다. 이슈가 된 사건이 터지고 새로운 대책이 마련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길지 않다. 그 결과가 앞서 말한 여러 차례의 법 개정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예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교육청에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라고 규정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었다. 사안처리 결과 ‘학교폭력 사안 아님’으로 처리될 경우

2) 세계일보(2023.06.07.), 아이들 극단선택 갈수록 있는데... 상담교사 있는 초교 26%뿐.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607519673?OutUrl=naver\(2023.06.19. 인출\)](https://www.segye.com/newsView/20230607519673?OutUrl=naver(2023.06.19. 인출))

가해학생이라 불렀던 학생이 역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소송을 거는 경우가 생겨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교폭력 담당교사들은 해당 표현을 자제하고, 양쪽 모두 ‘관련 학생’으로 표현해 왔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신고만 들어와도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학생을 신고한 학생에게서 즉시 분리하라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는 기존의 지침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그렇다고 앞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인가? 그렇지 않다. 문제는 여전히 이런 식의 조석변개하는 지침과 매뉴얼은 현장의 스텝을 꼬이게 만든다.

복잡한 매뉴얼, 교사들이 요청한다.

누군가는 이런 혼란 속에서 학교 교사의 자율성과 융통성, 전문성을 기대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 법안은 학교 교사에 대한 불신으로 시작되었다. 몇몇 사안들에서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왔음에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교사들이 논란이 되었고 이를 강력하게 법으로 절차 등을 강제한 것이 학교폭력 예방법이다. 따라서 이 법은 교사의 자율성과 융통성을 현저히 제한한다. 게다가 법과 매뉴얼이 점점 복잡해지면서 실제로 교사들의 역할이 들어갈 구멍을 찾기가 힘들다.

그런데 이제는 아이러니하게도 촘촘한 매뉴얼을 오히려 교사들이 요청하고 있다. 이는 학교폭력 처리에 대한 판단기준이 매뉴얼 준수 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이를 잘 설명하는 대표적인 것이 교육청 연수다. 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처리 담당교사들에게 이루어지는 연수는 판례를 기반으로 한 ‘금지 사안’을 주로 전달한다. ‘A를 했더니 소송에 걸렸다’, ‘B를 했더니 문제가 생겼다’, ‘C를 하지 않으니 소송에서 원인무효 처리가 되었다’ 같은 것이다.

이러한 연수를 듣고 겁을 먹은 교사들은 촘촘한 매뉴얼을 교육청과 교육부에 요청하게 된다. 이제 학교폭력을 ‘잘’ 처리한다는 뜻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피해자의 회복을 잘 지원했다거나 가해자가 반성하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 절차가 하자 없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촘촘하고 복잡한 매뉴얼은 학생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처리 담당 교사를 위한 것이 된다.

학교폭력이 발생하였을 때 비록 당장에 피해가 존재하지만, 학교장과 교사의 재량으로 학생들을 화해시키고 다시 함께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영혼 없이 기계적으로 절차에 따라 가해학생을 처벌하고 분리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학교 교육의 입장에서 나은 것일까?

학교에 기대하는 것이 전자일지 모르나, 전자는 학교폭력을 축소하고 은폐시켰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반면 후자는 학교폭력을 잘 처리한 사례가 된다. 이렇게 되니 아주 작은 사안이라도 그저 절차대로 하라는 것이 답이 되어버린다. 심지어 실제로 잘 화해했다가 몇 년 뒤에 해당 문제를 다시 들고나오면 당시의 일이 축소, 은폐가 되어버린다. 물론 여전히 화해를 가장한 축소와 은폐가 분명 존재한다. 그러나 무엇이 진짜 축소고 은폐인지 따질 때, 당시의 판단에 대한 존중은 남아있지 않고 절차를 지켰는지에만 집중한다.

이렇게 되면 현장의 교사는 ‘문제가 되지 않는’ 방향을 찾게 되고 자신의 역할을 축소하고 소극적이게 된다. 또한 교육청의 지침을 법전(法典)처럼 의존하게 된다. 적어도 지침과 매뉴얼대로 하면 교사에게 책임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목소리를 듣고 교육적 해법을 찾기보단, 교육청의 법률지원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문제없는 절차를 추구하게 된다.

학교의 현실을 간과한 잘못된 전제

학교폭력 처리 절차는 가·피해학생을 포함한 모든 관련자가 충실히 교사의 지시와 안내를 잘 따를 것이라는 가정하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관련자들이 그렇게 순순히 따라주는 경우는 별로 없다. 요즘은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학부모가 변호사를 대동하는 경우가 흔해졌다. 자신의 동의 없이 학생에게 사실확인서를 받을 경우 고소하겠다고 하며 변호인과 함께 학교에 방문하는 가해학생 학부모들도 있다. 교사는 경찰도 검사도 아니다. 법적 지식이 충분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러한 사안을 조사할 권한이 충분한 것도 아니다. 모르쇠로 일관하는 학생을 어떻게 조사해야 하는지도 잘 모른다.

학교라는 특성상 학생들은 오랫동안 같은 공간에서 지내면서 서로 간의 누적된 관계가 있어, 어느 것이 사건의 원인인지 알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 예컨대 언어폭력으로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을 신고하면, 지목받은 학생은 신고한 학생의 1~2년 전 언어폭력을 신고하고, 그러면 다시 신고자가 그보다 1년 전의 언어폭력을 신고하는 식이다. 학교폭력은 언제 당했든 무조건 신고를 기준으로 처리해야 하다 보니 사건의 원인을 규정하기가 쉽지 않다. 심지어는 중학교 때 당한 학교폭력을 참았다가 일부러 고등학교에 와서 신고하기도 한다.

학교폭력담당교사들의 업무 과중화를 해소하기 위해 수업 시수를 덜어준다는 것도 이상하다. 교사의 기본은 수업이건만, 수업을 줄여 학교폭력을 다룬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 같다. 수업을 더 하고 싶어서, 학교폭력 업무를 맡지 않으면 이기적인 교사가 되는 것인가?

제언

학교의 여러 문제 중 학교폭력은 큰 과제다. 학교폭력 사안처리와 관련된 연구도 많고 토론회도 많이 열리지만, 여러 답 중 어느 하나가 정답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 정책 수단이 반드시 예상한 정책 목적만을 달성하지 않는다. 학교폭력 관련 정책은 특히나 예상치 못한 부작용들을 많이 낳았다. 주요 이유는 이슈에 반응했기 때문이다. 당장 논란되는 부분만 해결하다 보면 새로운 문제가 나타난다. 그럴수록 복잡하게 꼬여가고 현장에서 교사들의 수동적인 대응을 낳으면서 이른바 ‘영혼 없는 교사’를 만들고 있다. 학교폭력 처리를 담당하는 학교 입장에서 종합적이고 전향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김승호 교사는 학교폭력 업무 담당교사와 학생부장을 하면서 교육 정책에 관심을 갖게 되어 지금은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있다. <과제탐구 끝판왕>, <20대를 시작하는 너에게>, <코로나 이후의 교육, 교사가 말하다>를 함께 썼다. 현재 청주 서원고등학교 소속이다.

SUBJECT_02

교육공동체의 치유와 성장을 위한 학교폭력 처리방안

김지혜 |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장학사

들어가며

학교폭력은 전 세계적으로 시급한 교육적 사안으로 인식되어, 이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해결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들이 이어져오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폭력예방법) 제정 이후, 지속적인 법률 개정과 제도적 보원을 통해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을 중심으로 다양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방안들을 모색하여 왔다.

학교폭력예방법상의 사안처리는 피해자의 보호와 치유, 가해자의 선도과 교육이라는 본질적 목표를 중심으로 수년간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실제적인 사안처리 과정에서는 학교폭력 관련 학교 구성원 간의 회복과 치유보다는 심리적 상처와 갈등 심화만을 남기고 법적 처리상의 종결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학교폭력은 예방적 노력을 강화하여 사안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나,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에 관한 해결의 철학과 관점, 접근방식에 대한 교육적 성찰과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지속가능한 학교 공동체의 치유와 성장을 위하여 학교폭력 처리방안은 어떠한 방식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몇 가지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초등학교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방향

첫째, 초등학생의 발달적 특징을 고려한 맥락적이고, 탄력적인 학교폭력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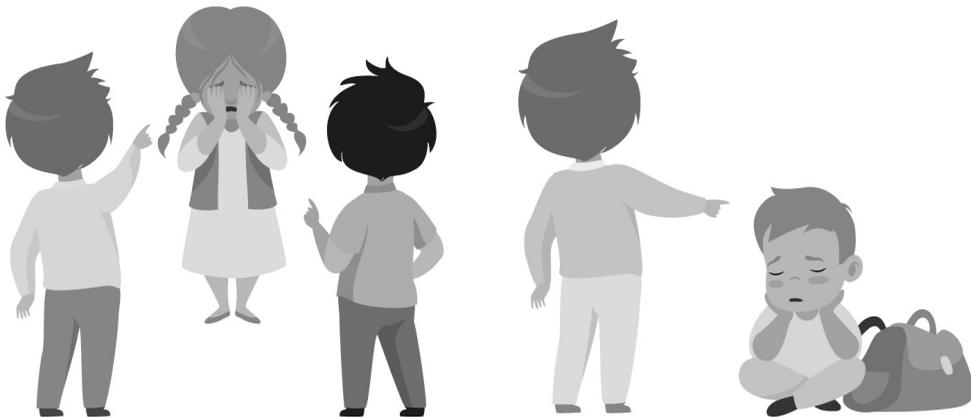
최근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 사안의 특징은 저연령화이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학교폭력 양상은 계획적이거나 집단적인 양상보다는 우발적 형태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오인수 외, 2016). 물론 어린이들의 갈등 사례 또한 학교폭력의 전조양상으로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개입하여 지속적인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초등 저학년(초등 1~2학년) 학생들 간에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관계적 갈등상황을 학교폭력으로 규정하여, 사법적으로 해결하려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어린 학생들 스스로 인간관계 내의 건강한 갈등 해결 과정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 발달과정상 사회성 발달과 문제해결력을 키워야 하는 시점에 작은 갈등 상황마저 부모의 과도한 개입으로 인해 학교폭력 사안으로 처리되는 사례는 교육적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둘째,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교육적 해결에 관한 중재 과정 없이 행정적인 절차만을 강조하는 학교 문화풍토를 개선해야 한다.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담임교사의 회복적 생활교육 철학에 의한 교육적 접근이나 화해 시도는 학교폭력 규정 상 은폐나 축소 등으로 몰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학교 측에서는 이러한 오해의 여지를 차단하고자 무조건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통해 사법절차에 의한 사안처리를 진행하게 된다. 회복적 교육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학교폭력 관계회복 프로그램이 소개되고는 있으나, 이 또한 양측의 관점 차이로 무산되거나 교육현장의 공감대 형성 부족으로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수행하게 되는 사안조사와 관련한 업무는 가해, 피해학생에 대한 신문조서(訊問調書) 업무에 해당된다(권혜정, 이선영, 2022). 이는 사법적인 형식과 절차 자체를 교육 현장에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학교 고유의 기능인 관련 학생들의 분쟁조정과 교육적 기능을 상실하도록 만들고 있다. 학교폭력의 해결 중착점은 처벌 중심의 응보적 접근이기보다는 학생들의 치유와 회복, 인간관계 내 문제해결 역량 강화가 중심이 되는 성장중심 접근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셋째, 학교폭력으로 인한 갈등 해결의 주체는 관련 학생과 교사가 되어야 하나, 학부모의 과도한 요구와 간섭에 의해 주체가 주객전도된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

학생들 간의 학교폭력 문제해결의 본질이 ‘학생들 간의 화해와 반성, 치유와 성장’이 중심이 되어야 하나 학부모 간의 다툼으로 비화되어 고소 등 법정분쟁으로 심화되는 경우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교육제도 안에서 해결가능한 갈등문제를 만만치 않은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변호사 선임을 통해 사법적으로 해결하려는 사례가 최근에 많아지고 있다. 오히려 관련 학생들끼리는 갈등 사안에 대한 원만한 화해가 이뤄졌으나, 관련 학부모 간의 심리적 갈등 심화로 해결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한다. 물론, 학교폭력 사안의 성격에 따라 처리방식이나 학부모의 개입정도가 달라질 수는 있다. 하지만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는 학생들의 주체적인 의지와 생각을 존중하고 해결의 주체가 관련 학생들과 학교공동체가 되어, 민주적인 의사소통 과정에 의해서 모두의 회복을 위해 해결 방향성을 찾아가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넷째,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담당교사와 담임교사가 경험하는 직무외상은 교사 소진과 학교교육력 약화로 이어지므로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외상(trauma)이란 충격적인 스트레스 사건에 의해 발생하는 심리적 상처이며, 학교폭력 또한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외상사건 중의 하나이다(서영석 외, 2012). 직무외상은 외상과 관련된 직무 수행 중에 발생하는 증상으로, 외상 사건을 직접 경험 및 목격하거나 외상 경험 대상자들을 지원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외상에 노출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학교폭력과 관련한 직무외상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교사들은 관련 학생들의 학부모들로부터 받는 교권침해 등의 비난과 수치심, 이로 인한 분노와 원망, 업무에서의 혼란과 부담, 동료 교사의 암묵적 냉대와 무관심, 관리자의 책임전가로 인한 고립과 소진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명희, 김진숙, 2016). 더불어, 교사 개인에게는 생활지도의 무능함과 담임교사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암묵적 비난으로 죄책감 등 부정적 정서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았다. 학교폭력 사안은 인간관계로 얽혀있는 모든 집단에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일상의 문제이며, 이는 해당 담임교사나 학교폭력 책임교사, 그들만의 역할로 치부하는 문화를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해당 관련학생의 피해, 담당교사의 직무외상에 대한 이해와 관심으로 모두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삼공(三共) 프로젝트를 꿈꾸며

언론 매체에서 수없이 반복 보도되는 학교폭력 이슈들을 지켜보는 교육자의 마음은 늘 안타까움으로 점철된다. 인간은 더 나을 것도 더 못날 것도 없이 ‘함께’ 도우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명제 하나만을 똑똑히 새기면 된다. 그래서 필자는 ‘함께’의 의미를 담은 삼공(三共) 프로젝트를 이야기하고 싶다. 공감(共感), 공유(共有), 공존(共存)이 바로 그것이다. 서로 이해하고, 나누고, 어우러져, 있는 그대로 존재하면 된다.

생각이 다른 인간이 복잡하게 얽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관계적 갈등의 발생과 해결과정은 수없이 이어짐이 마땅하고, 그 과정 자체가 바로 우리 인간의 삶인 것이다. 학교폭력은 분명 철저히 예방되어야 하고 발생한 즉시 명백한 해결과정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해결은 모든 교육공동체의 회복과 치유, 성장으로 마무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몇 가지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초등저학년 학생들은 발달적 특성상 우발적 형태의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무조건 사법적 절차로 발전하지 않도록 신중한 사안검토와 관리,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둘째, 학교폭력 관계회복 프로그램의 이해와 확산을 통해 학교 안에서 학교폭력의 교육적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보완·개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학교폭력 회복지원센터’ 설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사안처리의 어려움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여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이를 밀착형으로 상담하고 지원할 수 있는 단위학교 내의 학교폭력 전담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넷째, 노르웨이에서 시작하여 전 세계에 확산되고 있는 ‘올베우스의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처럼 학교폭력의 예방적 접근뿐만 아니라 가해자 및 피해자를 위한 실제적이고 치유적인 접근이 이뤄질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정착이 내실화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권혜정, 이선영(2022). 학교폭력 전담기구 사안처리 절차의 문제점 고찰 및 대안적 접근. *법과인권교육연구*, 15(2), 139-158.

김신영, 오인수(2018). 외상 후 스트레스로서의 폭력 피해를 경험한 교사의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기노출과 성장적 반추의 매개효과 및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교사교육연구*, 57(3), 383-3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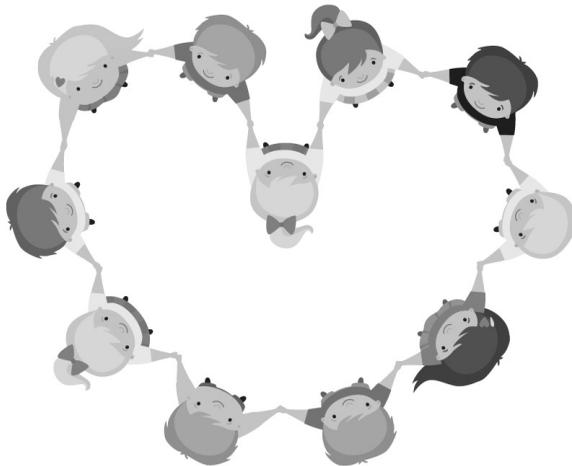
김지혜, 신효정(2018). 학교폭력 사안처리 개선 및 상담 개입 방안에 대한 고찰: 초등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교육학연구(구 안암교육학연구)*, 24(4), 137-168.

서영석, 조화진, 안하얀, 이정선(2012). 청소년들의 외상사건 경험. *교육심리연구*, 26(3), 787-816.

오인수, 이승연, 김화영, 김혜미(2016). 근거이론에 기반한 초등학교 저학년 학교폭력 특징에 대한 교사의 인식 탐색 연구. *교육과학연구*, 47(4), 73-93.

최명희, 김진숙(2016). 학교폭력 처리과정에서의 교사경험: 질적 메타종합 연구. *상담학연구*, 17(5), 441-464.

최준섭, 명소연(2022). 초등학교 교사의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부정적 정서 및 직무 외상으로서의 의미 탐색. *초등상담연구*, 21(1), 87-114.



김지혜 장학사는 현재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장학사로 일하고 있다.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며 학교상담 및 교사소진에 관한 다양한 정책연구를 수행하였다. 주요 관심분야는 학교상담, 교사소진, 교육활동 침해 등이다.

SUBJECT_03

2023년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통해 살펴보는 학교폭력예방방법의 쟁점

전수민 | 법무법인현재 변호사

교육부는 2023년 4월 1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12년 2월 6일 국무총리 주관으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지 11년 만에 나온 범정부 종합대책이다. 2020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으로 ‘학교장 자체 해결제’, ‘경미한 조치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완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신설’ 등이 도입되면서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방향이 엄벌주의, 무관용 원칙에서 관계회복, 화해로 전환되었다. 그런데 2023년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은 무관용 원칙, 피해학생 중심의 보호조치 강화 방안이 강조되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강화

2023년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은 출결 및 학적의 변화를 가져오는 6·7·8호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존 연한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지금까지는 학교생활기록부의 특기사항 및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학교폭력 관련 사항을 기재하였으나, 이번 대책에서는 ‘학교폭력 조치 상황란’을 신설하여 기재장소를 일원화하기로 하였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의 근거는 학교폭력예방법이 아니라 행정규칙인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이다¹⁾. 따라서 국회의 협조 또는 동의가 없더라도 정부의 의지만으로 언제라도 개정할 수 있다.

1) 헌법재판소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법률이 아닌 교육부 훈령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은 법률 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2016. 4. 28. 2012헌마630 결정).

	현행	개선안
1·2·3호	졸업과 동시에 삭제	
4·5호	원칙: 졸업 후 2년 보존 예외: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 직전 삭제 가능	
6·7호	원칙: 졸업 후 2년 보존 예외: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 직전 삭제 가능	원칙: 졸업 후 4년 보존 예외: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 직전 삭제 가능
8호	졸업 후 예외 없이 2년 보존	졸업 후 예외 없이 4년 보존
9호	영구보존(삭제 불가)	



학교폭력 2차 가해 시 징징계

2023년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은 2차 가해를 차단하기 위하여 사안 발생 시 학교장이 긴급조치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6호 이상의 처분을 하기로 하였다. 피해학생 보호라는 취지는 동의하지만,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

제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는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가해학생의 접근을 막아 더 이상의 폭력이나 보복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그런데 이는 모든 접촉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접촉을 금지하는 것이다. 문제는 ‘의도성’은 주관적인 의사이므로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워 접촉 금지의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피해학생 측에서는 가해학생이 짜러왔다, 교실이나 복도 등에서 어깨를 치고 지나갔다, 피해학생 학급에 가해학생이 다른 친구를 보러 오는 척하면서 2차 가해를 한다는 내용으로 2호 조치를 위반한다는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으나 가해학생의 ‘의도성’을 인정하기가 어려워 실제로 2호 조치 위반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제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금지의 범위를 심의위원회 또는 학교장이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여 가해학생이 하지 않아야 할 행동을 명확히 인지하여 피해학생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구체적인 범위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제2호 조치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는 가해학생이라면 당연히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라는 점에서 별도의 조치사항으로 규정하지 않고 신고된 모든 관련학생 및 심의위원회에서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이 따라야 할 의무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가중 처벌을 한다는 일반 규정을 두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피해학생 보호조치 강화

2023년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은 ①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후문에 따라 즉시 분리하는 범위를 3일에서 7일로 연장하고, ②학교장 긴급조치의 종류를 제1호(서면사과), 제2호(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제5호(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제6호(출석정지) 조치에서 제7호(학급교체)를 추가하고, ③피해학생에게 가해학생과의 분리요청권(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을 부여하기로 했다.

학교장 긴급조치로 학급교체를 추가하는 것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학교장 긴급조치로 출석정지를 하는 경우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즉시 분리할 필요가 있을 때이다(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1조). 그런데 심의위원회가 개최되기까지 기간이 지연되면 가해학생의 출석정지 기간이 길어지면서 가해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어서 학교장이 출석정지를 내리기가 조심스러울 수 있다. 이런 경우 출석정지가 아닌 학급교체를 하면 분리를 통한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의 학습권 보호가 모두 충족되므로 학교장에게 긴급조치를 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학교폭력을 신고할 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즉시 분리하라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은 가해 관련학생의 맞신고 및 민원, 즉시분리 기간 이후 피해학생 측의 추가 분리 요구 등으로 학교 현장에 부담이 되고 있으나, 가해자를 피해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피해학생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며, 고조된 학교폭력 갈등 상황을 완화할 수 있는 조치라는 점에서 그 필요성도 인정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의 즉시 분리는 법률 개정(2020.12.22.)으로 시행(2021.6.23.)되었다. 법률은 기간 제한 없이 즉시 분리하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지침으로 분리의 범위를 3일로 제한하였다. 심의위원회가 개최되기까지 신고 후 몇 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그 기간 동안 즉시 분리를 할 수 없으니, 교육지책으로 교육부가 3일간만 분리한다는 지침을 만든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가 지침으로 분리의 범위를 3일로 제한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하위법에서 분리의 기간, 방법을 정하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학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고 심의위원회가 개최되기까지 기간을 사안처리 가이드북은 4주로 정하고 있으나, 2022년의 경우 4주가 지나서 심의한 경우가 29.9%이며, 서울의 경우에는 70.9%가 4주가 지나서 심의하였다고 한다²⁾. 학교가 신고를 받아 사안조사를 하고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기간도 2~3주 정도가 소요된다. 그러므로 신고 후 심의위원회가 개최되려면 적어도 7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신고 이후 심의위원회가 개최되기까지 피해학생이 보호되기 위해서는 즉시분리의 기간을 연장하는 것 이외에 또 다른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원하는 관련학생에게는 임시적으로 다른 학급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하거나, 가정학습 또는 원격 수업 등으로 상대학생과 분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피해학생이 요구하는 분리요청권(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분리하여 피해학생을 보호하는 조치가 될 수 있으나, 가해학생의 학습권 침해, 학교폭력 조치가 나오기 전에 가해학생이라는 낙인이 발생하는 문제점 등이 있다. 또한 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으로 판단을 받기 전에 분리가 된다는 점에서 가해학생측에서 강하게 반발을 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가해학생 측에서 이를 징벌적인 조치가 아닌 서로를 위한 교육적 조치로 이해될 수 있도록 용어를 순화하고, 조치가 내려지는 과정에서 가해학생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여 조치의 수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은 언론이나 드라마에 나오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사안보다는 평범한 학생 간의 다툼이나 갈등, 폭력과 장난의 경계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³⁾. 학교폭력을 범죄로 접근하여 무관용원칙, 엄벌주의에 따라 처리하는 것은 많은 갈등을 유발하여 많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아직 미성숙한 선량한 학생들을 가해학생으로 낙인찍어 교화나 배움의 기회를 박탈할 수도 있다. 따라서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높고, 중범죄에 해당하는 학교폭력은 엄벌주의로 접근할 필요가

2) 2022년 국정감사 자료 참조

3) 2021학년도 가해학생 조치 현황을 보면 6호(출석정지) 이상의 중징계는 전체의 11.4% 정도이며, 1~3호의 경미한 조치가 전체의 78.3%로 대부분을 차지한다(2023. 4. 교육부가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자료 참조).

있으나, 어린 학생들의 갈등, 장난과 폭력의 경계에 있는 대부분의 사안들은 화해와 중재, 관계회복의 방향으로 사안을 처리하는 것이 보다 교육적이고 사회적 비용도 낮다.

학교는 우리 사회와 마찬가지로 모범생과 문제학생, 우등생과 열등생,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공존하는 공간이다. 그런데 모든 사안에서 '분리'를 원칙으로 하는 것은 학교 현실에 맞지 않고 학교의 체계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 또한 학교폭력의 범위가 넓고 기준이 낮다는 점에서 피해학생도 언젠가는 가해학생이 되어 분리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모든 학교폭력 사안을 무관용 원칙, 엄벌주의로 처리하기 보다는 관계회복, 화해와 중재의 기회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전수민 변호사는 서울시교육청 소속 변호사,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사안처리지원단 자문위원 및 교권보호위원,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겸임교수를 역임하였고, 교육부 학교폭력사안처리 가이드북 집필위원으로 참여하였다. 법무법인현재의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자문변호사, 교육부 자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미국의 학교폭력에 대한 법제와 정책

백경희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개요

미국은 연방법 차원에서 학교폭력에 관하여 직접 다루고 있지 않으나, 미국 교육부(the U.S. Department of Education, ED)와 미국 법무부(the U.S. Department of Justice, DOJ)가 관장하는 연방민권법(federal civil rights laws)을 통하여 이를 ‘차별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파악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학교범죄(School Crime)라는 범주 안에서 학교폭력을 논의하고 있는데, 학교범죄로는 폭력적인 사망(violent deaths), 치명적인 학교폭력 범죄와 단순 폭행이나

절도 등을 들고 있다. 즉, ‘학교폭력 피해’는 학교 교정, 소유부동산, 통학로 등의 장소적 공간에서, 수업, 통학, 공식적인 학교 행사의 참석 기간 중에 발생한, 학생, 교직원을 비롯하여 이들이 아닌 자까지 포함하는 살인, 자살, 공권력을 통한 체포과정 중의 살해 등을 의미한다. 미국 학교의 괴롭힘의 유형은 언어를 통한 모욕, 학교 내 좋지 않은 소문의 대상이 되는 경우, 신체적으로 폭력을 당하는 경우, 의도적으로 학생들 사이의 활동에서 배제되는 경우 등이며, 괴롭힘을 당한 이유는 육체적인 외모, 인종이나 민족, 성별, 장애, 종교, 성적(性的) 취향 등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괴롭힘을 당하는 장소로는 교실, 교내 식당, 학교 외곽, 교내 복도나 통학버스, 욕실이나 락커룸 등이다.

매년 미국 내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에 관한 정보들을 토대로 통계화한 국립교육통계센터(National Educational Statistics)의 2022년판 학교 범죄와 안전에 관한 지표(Indicators of School Crime and Safety: 2022)에 의하면,¹⁾ 2009년과 2020년 사이에 12~18세 학생들 사이에서 치명적이지 않은 학교 범죄의 피해비율이 학생 1,000명당 51건에서 11건으로 감소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비대면 교육의 실시 등을 이유로 2019년부터 2020년 사이에 학교폭력 발생률이 감소한 영향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부터 2021년 사이에 공립 및 사립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에서 총 93건의 학교 총격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러한 발생율은 2000년부터 2001년 사이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기록되고 있다.

뉴욕주²⁾

뉴욕주의 경우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모든 학생에 대한 존엄법(The Dignity for All Students Act)에서 ‘괴롭힘’과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먼저 괴롭힘(Harassment)과 따돌림(bullying)에 대하여는 협박, 위협 또는 학대에 의하거나 행동에 의해 적대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a)비합리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학생의 성적, 교육적 기회, 이익, 정신, 감정적 혹은 신체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b)학생이 신체적 안전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원인이 되는 행위, (c)학생에게 정서적 피해와 육체적 부상을 야기할 수 있는 행위, (d)학교 밖에서 발생하지만, 위협, 협박, 학대가 학교부지에 도달할 수 있는

1) Institute of Education Sciences, Report on Indicators of School Crime and Safety: 2021, National Educational Statistics(2022)

2) [https://www.p12.nysed.gov/dignityact/\(2023. 5. 31. 방문](https://www.p12.nysed.gov/dignityact/(2023. 5. 31. 방문)

학교환경 내에서 상당한 혼란의 위험을 예측할 수 있거나 그러한 위험을 만드는 행위를 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괴롭힘과 왕따 행위에는 인종, 피부색, 몸무게, 국적, 민족 집단, 종교, 종교적 행위, 장애, 성적 지향, 성별에 기초한 행위가 포함되며, 이 정의의 목적상 ‘위협, 협박 또는 학대’라는 용어는 언어적·비언어적 행위들을 포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한편 사이버 따돌림(Cyberbullying)은 앞서의 행위를 전자통신대화의 형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괴롭힘 또는 따돌림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경우 인종차별로 인한 괴롭힘이 학교폭력의 주요 문제로 다루어지면서 뉴욕주에서는 2019년 7월 모든 학생에 대한 존엄법의 일부를 수정하는 CROWN ACT를 시행하게 되었다. CROWN ACT는 학교의 학생 복장 및 행동 관련 규정이 인종의 특색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머리카락 질감이나 머리카락을 보호하기 위한 헤어스타일을 이유로 해당 인종의 학생을 학교 활동에서 제외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학교가 위와 같은 학생 복장 및 행동 관련 규정을 검토 및 수정하여 학생의 헤어스타일과 머리카락 질감에 대한 단속을 없애거나 명시적으로 금지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다른 문화와 전통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 정책을 학교가 마련할 수 있는 기회와 책임을 제시하게 된 것이다.³⁾

또한 뉴욕주의 경우 가해학생에 대하여 교육을 통한 선도프로그램(Education reform program Social Services)이 규정되어 있으며(Section 458-L), 가해학생의 감독자인 부모, 교사, 학교, 주의 교육부에 대한 책임에 관하여는 학교 폭력 발생 시 위기 개입, 비상상황에 대한 대처와 관리, 지역 전체 학교 안전에 관한 계획과 구체적 절차를 마련하고 채택하도록 함과 동시에 학교 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도록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Section 2801-A, School safety plans Education).

캘리포니아주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교육법(Education Code)을 통해 학교폭력에 대한 다양한 유형과 가해자의 책임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다. 먼저 학교폭력에 관하여 **유형별로** 정의하면서, ① **‘따돌림(bullying)’**은 서면 또는 전자적 수단으로 작성된 의사소통을 포함하여 심각한

3) <https://www.p12.nysed.gov/sss/documents/PreventingCROWNActIncidentsBrief.pdf>

4) [https://leginfo.ca.gov/faces/codesTOCSelected.xhtml?tocCode=EDC&tocTitle=+Education+Code++EDC\(2023. 5. 31. 방문\)](https://leginfo.ca.gov/faces/codesTOCSelected.xhtml?tocCode=EDC&tocTitle=+Education+Code++EDC(2023. 5. 31. 방문))

또는 교묘한 신체적 또는 언어적 행위로 학생 또는 학생의 재산에 해를 끼치기 위해 다른 학생(들)을 유도하는 것, 이성적인(일반적인) 학생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에 실질적으로 해로운 영향을 경험하게 하는 것, 일반적인 학생이 학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도록 유발하는 것, 일반적인 학생이 학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활동 또는 특권에 참여하거나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능력에 중대한 간섭을 유발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② ‘사이버 성적 따돌림(cyber sexual bullying)’은 성적으로 노골적인 사진 또는 기타 시각적 기록을 다른 학생 또는 학교 교직원에게 보급하거나 배포하려는 전자적 행위를 통해 이를 보급하거나 유포 또는 선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며, ③ ‘신고식(hazing)’은 학생에게 심각한 신체 손상이나 신체적 손상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학생 조직이나 단체에 의한 행위를 뜻한다고 하고 있다(48900~48900.9.).

그리고 **가해학생의 책임**에 관하여는 교육감이나 학교장의 재량권에 의거하여 퇴학, 사회봉사, 기타 교정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교육감이나 해당 학교의 장은 4학년에서 12학년까지 등록한 학생에 대하여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정학 또는 퇴학	교직원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대, 위협 또는 협박에 의도적으로 개입하여 수업을 실질적으로 방해하거나 실질적인 장애를 일으키고 그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교직원 또는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가해학생에게 정학이나 퇴학 처분 가능
정학	가해학생의 출석이 다른 학생들에게 위협을 야기하는 경우, 정학 외에 다른 적절한 교정수단이 없을 때 정학 처분 가능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직원,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와 학생 간 면담 실시 • 학교상담사, 심리학자, 사회복지사, 아동복지서비스인력 등과 상담 실시 • 행동을 평가하고 학생과 부모와 협력하여 행동을 다루기 위한 개별 계획을 연구팀에 의뢰하여 실시 • 개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창안하거나 포괄적인 심리사회적 또는 정신분석적 평가를 의뢰하여 실시 • 사회적 행동이나 분노 관리를 가르치는 프로그램에 등록 •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참여 • 평일 교내에서 일어나는 단계적 중재를 통한 긍정적인 행동을 지원 • 특정 행동 문제를 다루거나 지역의 부모모임이나 지역사회 단체와 협력하여 운영되는 활동·행동을 포함하는 긍정적인 활동·행동을 유발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 실시

한편 교육감과 학교장 등은 교내에서 사회봉사 또는 학부모 또는 보호자의 서면 허가로 학생의 비수업시간에 지역사회 봉사를 수행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 지역사회봉사의 내역으로는 ①야외 미화, ②지역사회 또는 교내 캠퍼스 정화, ③교사, 동료 또는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분야에서 지역사회 또는 학교 운동장에서 수행되는 작업 등을 들고 있다(48900.6).

노스캐롤라이나주⁵⁾

노스캐롤라이나주 역시 따돌림방지법에 관한 규율을 두고 있는데(North Carolina General Statute), 학교폭력의 정의와 관련하여 학교폭력의 피해의 대상을 교직원까지 넓혔다는 점, 학교의 범위를 대학, 전문대학에까지 확장하고 형사처벌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을 담고 있다는 점, 사이버 왕따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스캐롤라이나주는 학교폭력의 정의와 관련하여 ‘괴롭힘 내지 학대행위(Bullying and harassing behavior)’를 학교, 학교 소유지, 스쿨버스 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신체적 행동을 비롯해 서면, 사이버 또는 구두로 위협적인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①학생이나 교직원을 육체적 상해 혹은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실제적인 위협에 노출시키는 경우, ②학생의 교육성과, 기회 또는 혜택을 실질적으로 방해하거나 악화시키는 적대적인 환경(a hostile environment)⁶⁾을 창출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어떠한 학생이나 교직원도 학생이나 교직원을 괴롭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으며, 어떠한 사람도 피해자, 증인 또는 괴롭힘 또는 괴롭히는 행동에 대한 믿을만한 정보를 가진 사람에 대하여 보복하거나 가해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학생이나 교직원이 왕따 또는 괴롭힘 행위를 당했다는 것을 목격했거나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즉시 해당 학교 담당자에게 그 사건을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Article 29C).

둘째, 학교폭력의 하나로 ‘신입생을 굶리는 행위, 소위 신고식(Hazing)’을 ‘다른 학생으로 하여금 단체, 운동팀, 남학생클럽, 여학생클럽 혹은 다른 유사한 그룹을 포함하는 조직화된 학교그룹에 들어가기 위한 선발과정의 일부로 또는 회원의 전제조건으로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것’으로 세분화하면서 ‘이 주의 모든 대학, 전문대학 또는 학교에 다니는 어떤 학생도 신입생 굶리기에 가담하거나 사주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2급 경범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여 학교폭력과 관련된 학교의 범위를 대학, 전문대학까지 확장하고 있다(Article 9. § 14-35).

5) <https://www.ncleg.net/>(2023. 5. 31. 방문)

6) 피해자에 대한 괴롭힘이나 학대행위가 일반인의 입장에서든 그러한 행동이 괴롭힘이나 학대행위라는 것에 동의할 정도로 충분히 객관적으로 심각하거나 널리 유포된 상황인 경우를 의미한다.

셋째, 컴퓨터 또는 컴퓨터 네트워크를 이용한 괴롭힘인 사이버 왕따에 대한 정의와 처벌(Article 9. § 14-458.1) 및 학생에 의한 교직원에 대한 사이버 왕따에 대한 처벌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 사이버 따돌림의 구체적 예시로 가짜 프로파일 또는 웹사이트를 구축하거나, 인터넷 채팅방, 이메일, 단문메시지에서 피해자인 척하는 행위를 하고, 피해자와 관련된 은밀하고 개인적인 혹은 성적 정보를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타인이 올리도록 권유하는 행위, 인터넷에 피해자의 실제 혹은 변형된 이미지를 게시하거나 암호 보호 계정에 침입하거나 암호를 훔치는 것을 포함하여 컴퓨터 네트워크, 컴퓨터 데이터,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접근, 변경 또는 삭제하는 행위, 피해자에게 전자 메일 또는 기타 전송을 포함하여 반복적이고 계속적이며 지속적으로 전자 통신을 보내는 데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하는 행위, 진실이든 허위이든 간에 피해자를 스토킹하거나 괴롭히도록 제3자를 자극할 수 있는 의도를 가지고 글을 작성하는 행위,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괴롭힐 목적으로 학교 신참 관련 데이터의 무단 사본을 복사 및 배포하는 행위, 피해자에게 협박이나 고통을 줄 목적으로 음란물 인터넷 사이트에 등록하는 행위, 피해자의 허가 없이 전자우편 목록에 등록시키거나, 신참에게 협박 또는 고통을 줄 목적으로 정크 메일 메시지 및 인스턴트 메시지를 수령하게 하는 행위를 들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만일 가해자가 범행 당시에 18세 이상이면 모든 학생이 컴퓨터 또는 컴퓨터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이러한 행위 중 하나를 수행하는 것은 불법이다. 한편 학생이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직원을 위협하거나 괴롭힐 목적으로 앞서의 사이버 따돌림 행위를 행한 경우, 이에 대하여는 2급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규정하였다(Article 9. § 14-458.2).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미국 각주의 학교폭력에 관한 다양한 규제의 내용을 위와 같이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에 대하여 주는 시사점으로는 학교폭력의 유형과 적용범위에서의 차이점에 있다고 할 것이다.

학교폭력의 유형과 관련하여 최근 뉴욕주의 CROWN ACT의 경우 외모로 인한 인종차별적 차별이나 따돌림에 대처한 것으로서, 우리나라도 다문화청소년이 외모나 언어가 다르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의 피해학생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경청할 만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적용범위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을 지니고 있는 주는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주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스캐롤라이나 주는 학교폭력에 있어서 학교를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더하여 대학교, 전문대학교를 포섭하여 가장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의 범위에서도 학생을 비롯하여 교직원까지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학교폭력의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현실인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학교폭력에 관한 법제에서 피해자를 학생으로만 제한을 두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백경희 교수는 고려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민법) 학위를 받고 법률사무소 해울에서 수석변호사로 근무하였다. 현재는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교육부 민원조정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해석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 일반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민사법, 학교폭력, 아동학대, 보건 의료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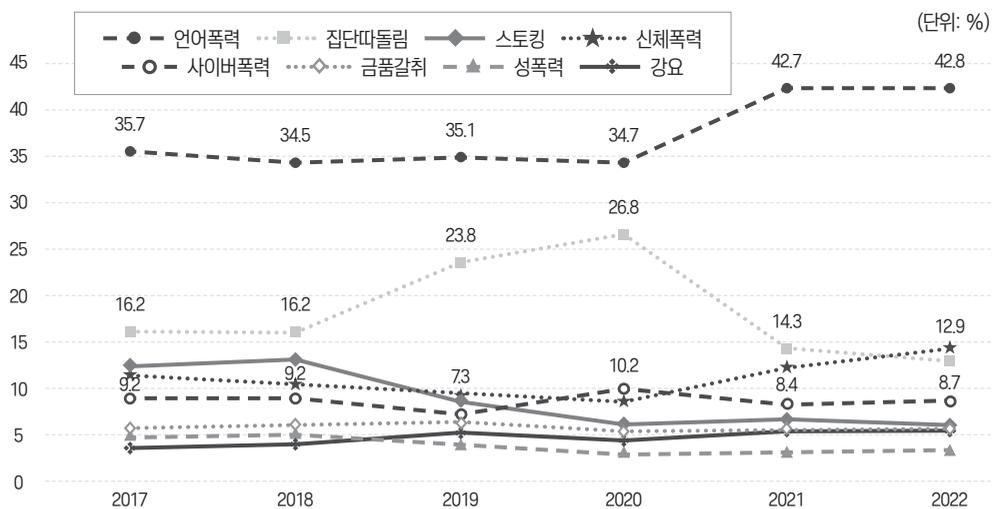
학교폭력실태조사에 나타난 학교폭력 변화 양상

김나영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조사지표연구실 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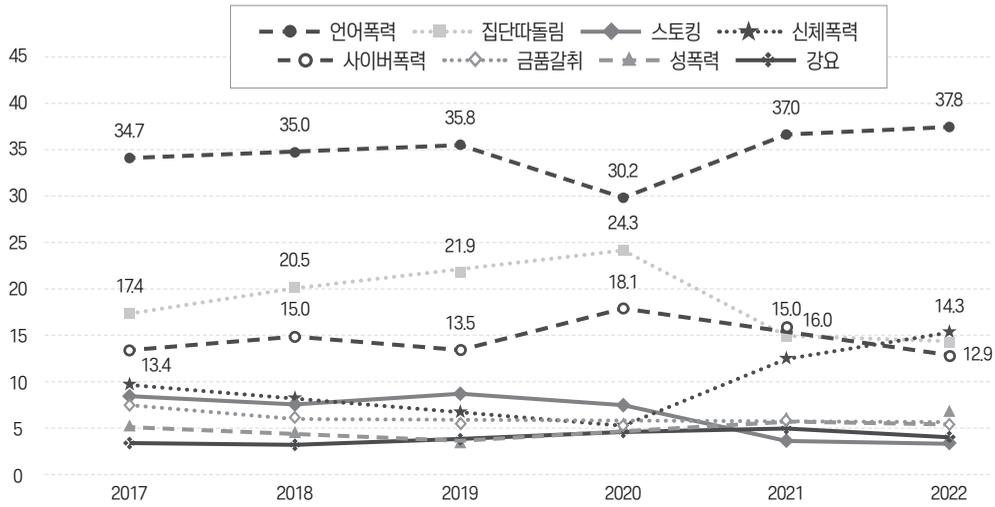
최근 드라마 '더 글로리' 열풍, 고위 공직자 후보 자녀의 학교폭력 논란 등으로 인해 학교폭력 문제는 또다시 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올랐다. 이번 호에서는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학교폭력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들의 학교폭력 경험에 대한 변화 양상을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학교폭력 피해 경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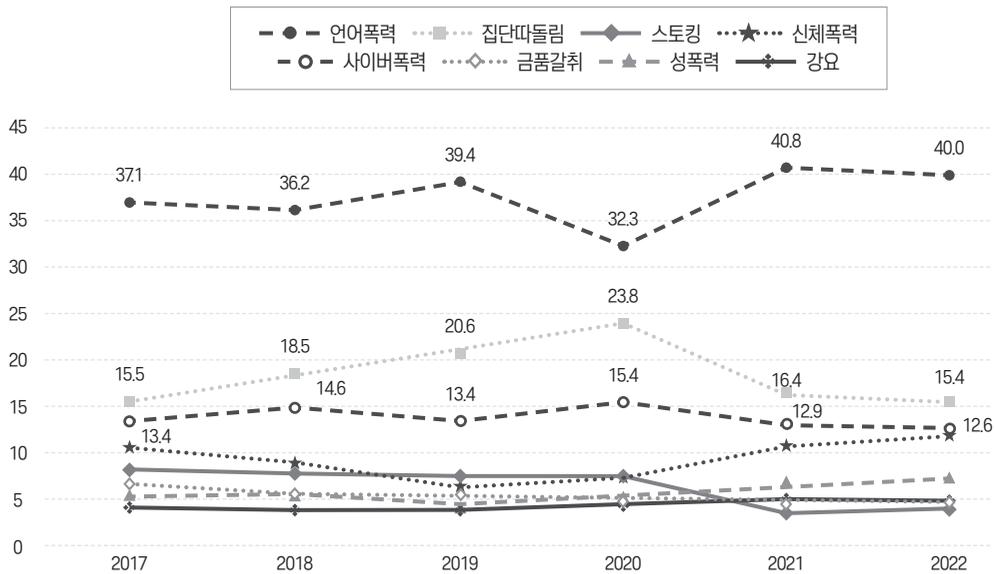
최근 6년간(2017~2022) 초·중·고등학생의 피해유형별 학교폭력 피해경험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1] ~ [그림 3]과 같다.



[그림 1] 초·중·고등학생의 피해유형별 비율(%) 추이(2017~2022)



[그림 2] 중학생의 피해유형별 비율(%) 추이(2017~2022)



[그림 3] 고등학생의 피해유형별 비율(%) 추이(2017~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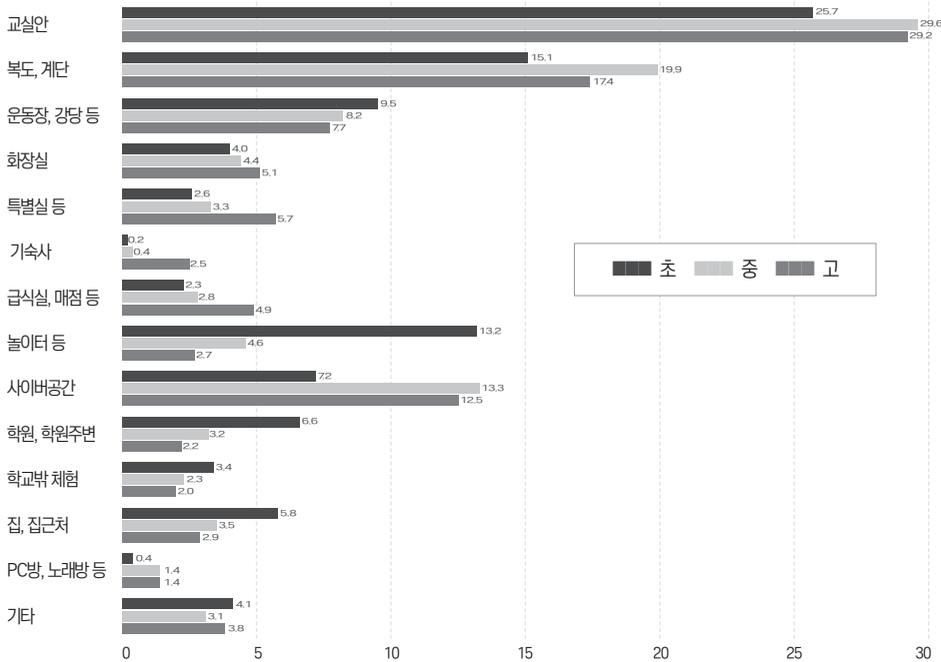
분석결과, 모든 학교급에서 ‘언어폭력’ 피해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생의 언어폭력 피해응답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었으며, 중·고등학생은 초등학생에 비해 ‘사이버폭력’의 피해 경험이 상대적으로 더욱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 피해유형별 학교폭력 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을 기점으로 ‘집단 따돌림’ 피해 비중은 감소한 반면, ‘언어폭력’의 피해 경험 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등교일수가 감소하면서 주로 학교에서 집단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집단따돌림’ 비중은 줄어든 반면, 원격수업이 확대되면서 온라인상의 ‘언어폭력’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유추된다¹⁾. 즉, 스토킹, 금품갈취, 신체폭력 등 드러나는 피해 비중은 줄어들었으나,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등의 확대로 인해 학교폭력 양상이 점차 저연령화, 은밀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조사시점은 2022.4.11.~2022.5.8일로 2021년 2학기부터 응답시점까지의 학교폭력 경험을 묻고 있다. 이에 2022년을 ‘학교 일상회복 추진방안’(2022년 5월 1일)에 따른 학교수업 정상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으로 판단하였다.

학교폭력 피해 장소

학교폭력을 주로 경험하는 피해 장소를 살펴보면 [그림 4]와 같다.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폭력 피해를 주로 경험하는 장소는 ‘교실 안’, ‘복도, 계단’ 등으로 ‘학교 내’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중·고등학생에 비해 초등학생은 ‘놀이터’, ‘학원이나 학원 주변’ 등 ‘학교 밖’에서의 피해경험 비율이 더 높았으며, 중·고등학생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경험이 초등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현실세계(real world)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의 학교폭력 양상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며, 방과후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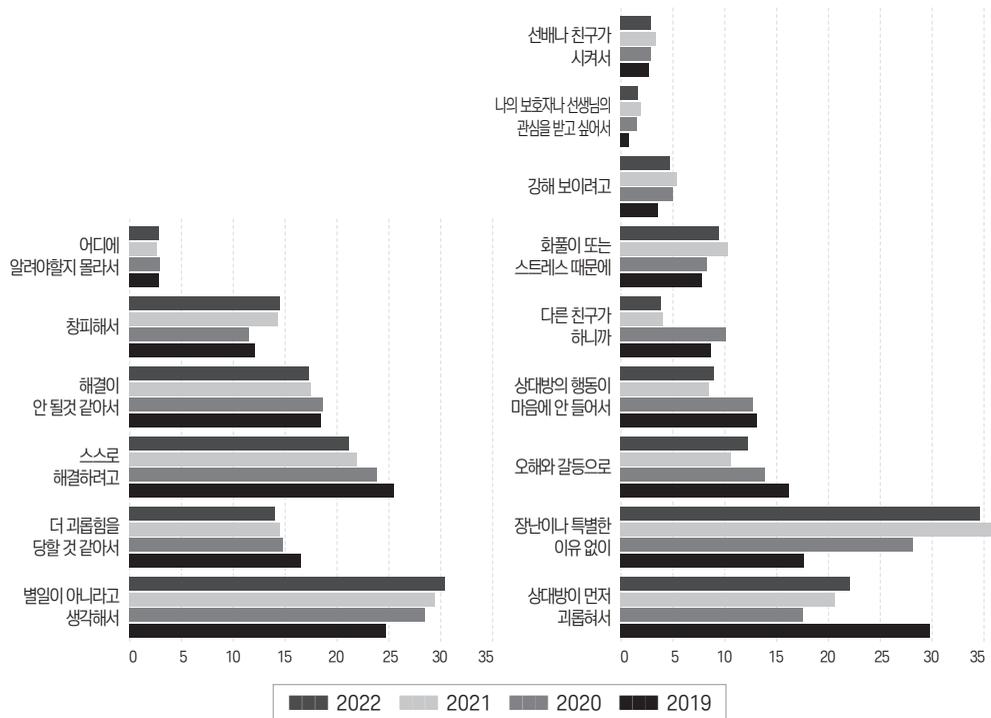


[그림 4] 학교급별 학교폭력 피해장소

피해 미신고 이유 및 가해 이유

최근 4년간(2019~2022) 학교폭력 ‘피해 미신고 이유’와 ‘가해 이유’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5]와 같다. 모든 학교급에서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음에도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피해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학생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 학교폭력에 가담했다고 응답한 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 현행 교육과정 내에서 학교폭력예방교육이 학기별 1회 이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있음²⁾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수준은 여전히 낮은 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를 위한 명확한 개념 정의 및 사회적 확산, 가정-학교-지역사회가 연계된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의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그림 5] 학교폭력 피해 미신고 이유(좌) 및 가해 이유(우)(단위: %)

[참고문헌]

- 교육부(2022.09.05).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 교육부(2021.09.06). 2021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 교육부(2021.01.21.). 2020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 교육부(2019.08.27).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 교육부(2018.08.28). 2018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 교육부(2017.07.11.). 2017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교육정책네트워크



교육정책네트워크는

교육부, 시도 교육청, 교육분야 관계기관 간의
인적교류, 공동연구, 정보공유를 위한 협력체제를 말합니다.



<https://edpolicy.kedi.re.kr>

QR코드로 교육정책네트워크를
간편하게 만나보세요.

교육정책네트워크에서 하는 일

교육정책 발굴

교육부-17개 시도 교육청-교육분야 관계기관 간
네트워크 협의체 운영



정책 지원

- 교육정책 토론회
- 교육정책개선-선도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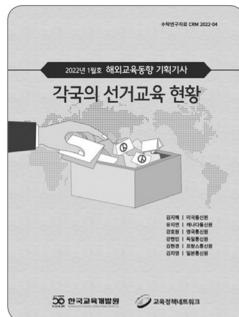
교육정보 공유

주요 교육정책 및 현안에 대한
교육공동체 간 공론의 장 마련



(월간)교육정책포럼

12개국의 최신 교육뉴스 및
교육정책 자료 제공



해외교육동향

주요 교육쟁점에 대한
분석 및 방향 제시



교육현안보고서(정책분석편, 글로벌교육편)

외국의 교육정책 분석 및
시사점 수록



edpolicy@kedi.re.kr로 구독신청을 하시면 매월 신속하고 질 높은 국내외 교육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TALK

카톡에서 교육정책네트워크 채널 추가해주세요 +



www.eduforum.re.kr

